

## 외국의 식물검역 요약

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외국의 검역기준을 기재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([www.npqs.go.kr](http://www.npqs.go.kr)) 및 (사)한국파렛트협회 홈페이지([www.kopal.or.kr](http://www.kopal.or.kr)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.. <편집자주>

기재 순서 : 1. 중국, 2. 미국, 3. 캐나다, 4. 인도, 5. 호주, 6. 뉴질랜드, 7. 유럽연합, 8. 브라질, 9. 러시아, 10. 핀란드, 11. 오스트리아, 12. 멕시코, 13. 아르헨티나, 14. 엘살바도르

### 1. 중국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대상품목 : 한국, 미국, 일본산 칩엽수 포장재
- 요건
  - 목재중심부 56℃이상의 온도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중국의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처리
  - 식물위생증명서에 처리사실 기재
- <칩엽수 포장재가 아닐 경우>
  - 수출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중국측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중국 식물검역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동 사항을 Invoice 또는/그리고 B/L에 명시
- 검사방법 : 도착지 선발검사(selective examination)
- 불이행시 조치
  -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여 처리
  -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화물과 함께 폐기 또는 반송
- 시행일자 : 한국산(2002. 2. 20), 미국, 일본산(2000. 1. 1.)
- 관련병해충 : 소나무재선충



## 2. 미국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### [현행]

- 검역대상 : 우리나라산 미가공 목재포장재
- 요건
  - 수피가 없는 경우 : 도착지 검사
  - 수피가 있는 경우 : 다음중 한가지 처리를 실시하였다는 소독증명서 첨부
    - 열처리 : 71.1°C에서 75분
    - MB훈증 : (21°C이상 48g/m<sup>3</sup> 16시간), (4.5 ~ 20.6°C 80g/m<sup>3</sup> 16시간)
    - 화학적 방부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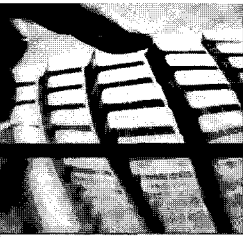
※ 2003. 5. 20. 입법예고된 새로운 목재포장재 수입검역규정의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  
[규격 개정(안)]

<모든 국가산 목재포장재(캐나다 및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주(State)산 제외)>

- 열처리 또는 MB훈증(IPPC Guideline 채택)
    - 열처리 :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56°C에서 최소 30분이상
      - ※ kiln-drying,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, 기타 steam, hot water 또는 dry heat를 통하여 이 온도에 도달한 처리 포함
    - MB훈증
      - 21°C이상 48g 16시간
      - 16°C이상 56g 16시간
      - 11°C이상 64g 16시간
  - IPPC가 승인한 마크 표시
    - 중국(홍콩 포함)산 목재포장재도 새로운 소독처리규정 적용
- ※ '04.1.1부터 동 개정(안)에 고시된 새로운 소독처리 규정에 의하여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를 찍을 것을 권고함.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과 개정(안)의 소독처리가 모두 인정됨.

## 3.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검역대상 : 미국 이외 지역산 미가공 목재포장재
- 요건
  -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수출국 식물보호기관(한국: 국립식물검역소)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가 찍힌 목재포장재만 수입허용
    - 열처리 :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56°C에서 30분간 처리
    - MB훈증(상압)
      - 21°C이상 48g/m<sup>3</sup> 16시간
      - 16°C이상 56g/m<sup>3</sup> 16시간



## | 식물 검역 |

11°C이상 64g/m<sup>3</sup> 16시간

- 기타 캐나다 식품검사청(CFIA)이 승인한 방법
- 요건 미부합 화물에 대한 조치
  - 전면 시행일(2005. 4. 1.) 이전 : 상대국에 통보하고 캐나다의 규제병해충 발견시 검역 조치
  - 전면 시행일(2005. 4. 1.) 이후 : 무조건 반송
  - ※ 전면 시행 전까지는 상기와 같이 소독처리하고 동 처리 사실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도 인정됨

### 4. 인도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시행일: 2004. 11. 1.
- 대상 : 미가공 목재포장재
- 요건
  -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 한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또는 식물위생증명서 첨부
    - MB훈증: 21°C 에서 48g/m<sup>3</sup>으로 16시간 처리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
    -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
    - Kiln Drying(KD)처리
    -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(CPI) 처리
    - ISPM No. 15의 열처리요건을 만족하는 기타 처리
- 불이행시 조치 : 도착지에서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소독처리 한 후 통관
- 합판, 베니어, 파티클보드 등 접착제, 열, 압력 및 이러한 방법을 혼용하여 생산된 가공품으로만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
- veneer peeler cores, 톱밥, 목모(wood wool), 대패밥(shavings) 및 두께 6mm 이하의 얇은 나무조각은 인도의 식물방역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, 적용대상에서 제외
-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이 아닌 여행객의 수하물 포장에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적용 제외

### 5. 호주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대상 :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산 목재 포장재
- 처리조건 : 다음 중 한가지 처리를 실시하고 처리사실을 기재한 증명서 첨부
  - 훈 증
    - MB : 21°C에서 48g/m<sup>3</sup> 24시간
    - Sulphuryl fluoride : 21°C에서 64g/m<sup>3</sup> 16시간
  - 화학적 방부처리
  - 열처리 또는 Kiln Drying



## | 식물 검역 |

- 1) 목재중심부 56℃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또는
- 2) 열처리 시설내 건구온도 및 습구온도를 측정하여 처리시간 동안 건구온도는 74℃ 이상, 습구온도와와의 차이는 2℃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게 하여 처리시간 동안 목재 중심부 온도가 74℃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처리시간은 목재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며, 처리 후 목재함수율이 12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
    - 목재 두께 0~25(mm) 4시간 처리
    - 목재 두께 26~50(mm) 6시간 처리
    - 목재 두께 51~75(mm) 8시간 처리
    - 목재 두께 76~100(mm) 10시간 처리
    - 목재 두께 101~150(mm) 14시간 처리
    - 목재 두께 151~200(mm) 16시간 처리
    - 두께 미확인/미기재의 경우 AQIS측 검사 필요
    - 목재두께 201(mm) 이상의 경우 18시간 이상 처리

### ○ 기타

- 소독처리는 선적 전 21일 이내에 실시
- 수피가 없어야 함

### ○ 합판, 파티클보드 등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가 선적 전 21일 이내에 새로 제작되어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

- 동 사항을 부기한 증명서 첨부시 호주 도착지에서 검사 제외

### ○ 시행일자 : 2003. 12. 1.

## 6. 뉴질랜드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### ○ 대상 : 모든 국가산 미가공 목재포장재

### ○ 요건

- 음 중 한가지 처리를 실시한 경우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소독증명서에 처리사실 기재
  - 훈증 : MB, Sulphuryl fluoride, 인화수소
  - 열처리 :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70℃에서 4시간이상 처리
  - 화학적 방부처리
- ISPM No.15의 소독처리기준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처리마크 표시
  - 열처리 : 목재중심부 56℃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
  - MB훈증

21℃이상에서 48g/m<sup>3</sup> 약량으로 16시간 처리

16℃이상에서 56g/m<sup>3</sup> 약량으로 16시간 처리

11℃이상에서 64g/m<sup>3</sup> 약량으로 16시간 처리

### ○ 기타 : 소독처리는 선적 전 21일 이내에 실시, 수피가 없어야 함

### ○ 시행일자 : 2003. 4. 16.



### 7. 유럽연합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대상 : 침엽수 목재포장재
- 조건 : 수피 및 벌레구멍이 없고, 수분함량 20% 이하
- 시행일자 : 2000. 5. 8.
- ※ ISPM No.15에 따른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건을 2005. 3. 1.부터 시행할 예정

### 8. 브라질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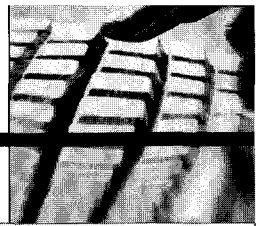
- 대상 : 한국, 일본, 중국(홍콩 포함)산 목재포장재
- 요건 : MB훈증 또는 열처리, 기타 방법으로 소독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처리사실 부기
- 불이행시 조치 : 도착지에서 MB훈증소독 실시
  - 21℃ 이상에서 80g/m<sup>3</sup>약량으로 24시간 소독(소독비용 수입자 부담)
- 기타 : 선적전 15일 이내에 소독 실시

### 9. 러시아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대상 : 일본, 중국, 대만, 한국, 미국, 캐나다, 멕시코산 목재포장재
- 관련병해충 : 소나무재선충, 유리알락하늘소
- 요건 : 식물위생증명서 첨부
- 불이행시 조치
  - 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,
  - MB훈증 또는 고열처리,
  - 반입금지
- 시행일자 : 2000. 1. 1.

### 10. 핀란드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대상
  - 한국, 일본, 캐나다, 중국, 멕시코, 대만, 미국산 침엽수 포장재(측백나무속 제외)
- 관련병해충 : 소나무재선충 및 기타 검역병해충
- 요건
  -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기재
    - 수피제거,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벌레구멍(3mm이상) 없음, 건물중 수분함량 20% 미만
    - 열처리 : 중심부 온도 56℃ 이상에서 30분
    - kiln dry : 수분함량 20% 이하



· 적절한 소독제로 훈증

- 기타 : 이외의 국가산 목재포장재는 EU요건과 동일
- 시행일자 : 2000. 5. 31

### 11. 오스트리아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대상 : 한국, 중국, 대만, 미국산 활엽수 목재 포장재
- 관련병해충 : 유리알락하늘소
- 요건 : 수피, 벌레구멍 없고, 수분함량 20% 이하로 KD 처리
- 기타 : 도착지에서 임의추출 검사 실시
- 시행일자 : 2001. 9. 1.

### 12. 멕시코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현재 식물위생증명서 첨부할 필요 없으며
- 도착지에서 육안검사 결과 해충 발견시 검역조치 실시 : 소독, 폐기 또는 반송
- 국제기준 ISPM No.15에 따른 수입검역규정을 발표(2004. 1. 2.)하였으나 현재는 유예중이며 유예기간은 미정
- 2005년 중반부터 수입목재포장재에 대한 ISPM No.15을 적용할 계획  
- 시행일자 미정

### 13. 아르헨티나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수피, 해충, 해충피해 흔적이 없어야 함 : 수입 검사시 발견될 경우 훈증소독 또는 폐기
- 목재포장재에 대한 상기 조건을 증명하는 확인서(별도양식, 아르헨티나 현지 정부기관에 비치)를 통관 서류에 첨부하여 세관 당국에 신고

### 14. 엘살바도르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- ISPM No.15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훈증 후 소독처리마크 표시
- 소독처리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처분 : 소각 또는 훈증, 반송 조치
- 시행일자 : 2004. 5. 1.